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092호
2. 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
3. 발의일자 : 2020. 12. 22.
4. 회부일자 : 2021. 1. 21.

II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인 마포평생학습관 내 수영장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고 있으나, 사용료 반환 및 감면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해 혼동을 줄 수 있는바,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III. 주요내용

1. 평생학습관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(안 제2조제2항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2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3. 기 타 : 해당없음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92호로 발의되어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평생학습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‘사용료’를 ‘사용료 징수,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’으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(제2조제1항1), 제7조2), 제9조3))하고 있습니다.

-
- 1) 제2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도서관장 및 평생학습관장(이하 ‘관장’이라 한다)은 그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.
1.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는 별표1과 같다.
 2.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 2,000원으로 한다.
 3. 강습·교육 참여에 대한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.
 4. 대출회원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.
- 2) 제7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.
1.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
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
 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,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
 4. 사용료 및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○ 다만 '평생학습관내 설치된 수영장·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' 동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,

이때 규정된 '사용료'를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'사용료'만으로 해석할 경우 사용료 반환이나 사용료 감면 등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동 조례는 평생교육강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준용규정만 있을 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,

그리고 평생학습관 중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은 수영장 사용시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을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실무상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

동 조례 제2조제2항의 '사용료'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의미로 추정하는 것이 법리 해석상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.

○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사용료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는

-
- 3) 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
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
 4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
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
 6.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한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 비율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수강료 감면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것은 사용료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외 반환 및 감면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나, 의미 중복을 고려하여 구체적 열거 없이 ‘사용료에 관한 사항’으로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2024, 2021.2.9.),

그러나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문언의 해석에 따른 혼동을 방지 함으로써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